부천시장기발전계획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: 2003년 12월 6일 부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3년 12월 6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109회 부천시의회(정례회) 제7차 기획재정위원회(2003. 12. 16) 상정, 보류
- 제11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)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(2004. 1. 15) 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: 기획예산과장 정 진 환)

가. 제안이유

-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 시정전반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전전략을 수립, 제시함은 물론 시 정책을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체제로 구축 함으로써,
- 시정운영을 능률성, 효과성, 민주성 및 일관성을 바탕으로 정책의 형성, 집행, 평가로 이어지는 환류(Feed-Back) 기능의 토대를 마련하여 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장기발전계획, 중장기재정계획, 정책평가 및 사회지표 개발 등에 대한 용어를 정함(안 제2조)
- 시 정책방향을 결정할 때에는 장기발전계획에 입각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 립하고, 평가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함.(안 제4조)

- 장기발전계획은 효과성, 가치성 및 실행가능성을 기준으로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도록 함.(안 제6조 및 제7조)
- 장기발전계획 수립시 전문가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부시장을 위원장로 하는 9인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. (안 제9조 내지 제11조)
- 중기재정계획은 장기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정책변화와 재정여건 등을 반영 하여 매년 수정, 보완하도록 함.(안 제13조 내지 제15조)
- 시장은 매년 평가운영 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정함. (안 제13조 내지 제15조)
-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파악, 조사하여 계속성과 비교진단이 용이 하도록 작성하는 사회지표는 3년을 주기로 작성하도록 함.(안 제16조 내지 제18조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 의 내 용	답 변 내 용
○ 위원회 구성시 타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어 활동하는 지는 제외하고 실질적인 활동이 가능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은 없는지?	○ 위원회 구성시 타 위원회와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고, 관련분야의 전문 지식을 겸비한 자로 위촉하겠음.
○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위원회의 수정 부분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 동의를 하는지?	 ○ 제4조제1항의 "목표를" 자구 삽입과 제8조제2항의 위원회 위원수 및 제9조제3항의 회의 개의 정족수와 제19조, 제21조 제목, 제21조 제2항의 자구 수정에 동의함.

4. 토론요지

가. 찬성토론

○ 21세기 무한경쟁시대와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시정 전반의 운영에 있어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의 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잘 운영하기 바람.

나. 반대토론

○ 없 음

5. 심사결과

○ 수정의결

6. 소수의견

○ 없 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

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의 안	관련
번 호	제207호
의 결	2004.1.16
년월일	(제110회)

제안년월일 : 2004년 1월 15일

제 안 자:기획재정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시 정책방향의 근간이 되는 장기발전계획의 성격상 다양한 각 분야 별 전문가의 자문위원 수 확대 필요
- 자문위원회의 개의 요건 강화
- 불합리한 조문의 문맥(문법) 및 제목과의 연관성, 의미의 불명확한 자구 수정

□ 주요골자

- 장기발전계획에 입각하여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시 시의 정책방향은 물론 목표도 동시에 설정토록 수정(안 제4조제1항)
- 장기발전계획의 성격상 도시, 건설교통, 환경, 경제, 복지, 정책기획, 문화, 행정 등 다양한 각 분야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자문위원 수 확대(안 제8조제2항)
- 회의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개의 요건 강화(안 제9조제3항)
- 조문의 문맥(문법)상 불합한 자구, 제목과의 연관성이 없거나 불명확 한 의미의 자구 수정(안 제19조, 안 제21조, 안 제21조제2항)

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부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및정책평가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 제4조제1항중 "정책방향을"을 "정책방향과 목표를"로 한다.
- 안 제8조제2항중 "9인 이내"를 "15인 이내"로 한다.
- 안 제9조제3항중 "과반수의 출석으로"를 "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"로 한다.
- 안 제19조중 "작성된 사회지표는"을 "사회지표는"으로 한다.
- 안 제21조의 제목 "(개발주기)"를 "(작성주기)"로 한다.
- 안 제21조제2항중 "조사의"를 "사회지표 개발의"로 한다.

신·구 조 문 대 비 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있어서는 장기발전계획에 입각하여 중기재 정계획을 수립하고, 시 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.	제4조(기본원칙) ① <u>정책방향과 목표를</u>
②(생략)	②(제정안과 같음)
제8조(자문위원회) ①(생략) ②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<u>9인 이내</u> 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 ③~④(생략)	제8조(자문위원회) ①(제정안과 같음) ② <u>15인 이내</u> ③~④(제정안과 같음)
제9조(회의) ①~②(생략) ③회의는 <u>과반수의 출석으로</u>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	제9조(회의) ①~②(제정안과 같음) ③ <u>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</u>
제19조(작성목적) <u>작성된 사회지표는</u> 시 정 책결정 및 중·장기계획 수립시 기초 자 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작성한다.	제19조(작성목적) <u>사회지표는</u>
제21조(<u>개발주기</u>) ①(생략) ② <u>조사의</u>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회할 수 있다.	제21조(<u>작성주기</u>) ①(제정안과 같음) ②사회지표 개발의

```
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
                        (
                      6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
3. "
4. "
                   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
 3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,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
                         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
 5
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) 5
1.
2.
3. 가
8 (
                     가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)
                     15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가
2
 9 ( )
               3
                    2
 10 ( )
11 (
12 (
```

3 13 (<u>16</u> () 가 15 (가 4 16 () 가 . 가 17 (가) 가 가 가 가 , 가 가 가 가 5 19 (20 () 2. 3. **21** () 3 6

22 () .